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성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945

발의연월일: 2025. 2. 6.

발 의 자:정성호·천하람·박성준

소병훈 • 이병진 • 복기왕

김문수 · 박희승 · 주철현

안규백 • 이연희 • 윤후덕

최기상 • 채현일 • 황 희

임광현 의원(16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반면,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출의경우 3년 단위로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·세목별로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함.

그러나 조세지출 역시 국가재정운용의 중요수단이며 최근 조세지출 규모가 70조원대에 이르고 있는 만큼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 여 5년의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지표를 전망하고 조세지출을 포함한 총 정부지출에 대하여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하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조세지출예산서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작성 대상 연도 범위를 현행 3년 단위에서 직전 2개 연도 실적과 해당 연

도 및 다음 2개 연도로 확대한 총 5년 단위로 운영하게 하려는 것임 (안 제142조의2제1항). 법률 제 호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2조의2제1항 중 "직전 연도"를 "직전 2개 연도"로, "다음 연도"를 "다음 2개 연도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2조의2(조세지출예산서의 작	제142조의2(조세지출예산서의 작
성)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	정) ①
감면·비과세·소득공제·세액공	
제·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	
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	
원(이하 "조세지출"이라 한다)	
의 <u>직전 연도</u> 실적과 해당 연	<u>직전 2개 연도</u>
도 및 <u>다음 연도</u> 의 추정금액을	<u>다음 2개 연도</u>
기능별·세목별로 분석한 보고	
서(이하 "조세지출예산서"라 한	
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	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